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3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현행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가 통합운영 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각종사안을 심의 토록 규정
- 나. 위원회의 구성은 구의회 의원,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,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,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(단체) 및 시설의 대표자 등으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.
- 다. 위원회의 임기는 3년,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회의참석, 업무와 관련한 출장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
- 라. 위원회 업무 수행중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3. 관련법령

- 가.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조
- 나. 부산광역시사하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
- 다.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
- 라.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
- 마.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
- 바.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
2.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시행
3.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
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5. 영유아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6.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7.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
8.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
9.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
10. 부랑인 입.퇴소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하구청장이 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사회산업국장,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

3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(단체) 및 시설의 대표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 등) ①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간사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. 다만, 안전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.

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위원의 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“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3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②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“위원회 설치”를 “대상자 선정”으로 하고, 제1항을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유자대상은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 선정 한다”로 하며, 동조 제2항,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

③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호 본문중 “구정조정위원회”를 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”로 한다.

④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본문중 “사하구보육위원회(이하 “보육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(이하 “사회복지위원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6조제3항 및 제14조 본문중 “보육위원회”를 “사회복지위원회”로 한다.

⑤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, 제2항, 제3항 제1호·제2호 및 제4항, 제5항,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